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476
----------	-------

발의연월일 : 2023. 11. 16.

발 의 자 : 김용판 · 김성원 · 박덕흠
백종헌 · 박대수 · 배준영
金炳旭 · 최춘식 · 권성동
권영세 · 권명호 · 한기호
이주환 · 정운천 · 정우택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함에도 하도급계약의 민사상 효력은 유지되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음

이에 고질적인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마땅히 이를 무효로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
고자 함(안 제3조의4제1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당한 특약 내용이 수급 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특약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약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